

단체협약서(보충협약서)

한국전자통신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)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(이하 “조합”)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비정규직지부(이하 “지부”)의 설립에 따라 2017년 11월13일 합의한 단체협약서의 보충협약서를 체결한다.

제1조 (지부의 근로시간면제) ① 연구원은 지부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며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 기준인원 한도는 조합과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조합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부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지부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한다.

③ 조합은 지부로부터 지부의 파트타임을 포함한 근로시간면제대상자의 명단 및 각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받아 연구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조 (지부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) ① 지부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지부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.

1. 지부 상무집행위원회, 지부 총회(정기 년1회, 임시 년2회), 지부 대의원대회(년6회)

2. 회계감사(년2회), 선거

3. 기타 연구원측과 지부가 협의한 사항

② 연구원은 ①의 각호의 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다.

제3조 (지부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) ① 연구원은 지부 근로시간면제자의 정당한 활동시간을 통상근무로 간주하고, 근로시간면제를 이유로 임금 등 근로 조건에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.

② 연구원은 지부 근로시간면제자의 원직복귀 시 원래의 직에 복귀하도록 한다.

제4조 (지부의 연구원 시설의 사용) ① 연구원은 지부 사무실 및 지부 활동에 필요한 시설, 집기, 사무용기기 등을 제공하고 지부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. 집기 및 사무용기기 제공은 연구원 지급기준에 따른다.

② 지부가 시설 사용을 요청할 시에는 행사에 관한 사항(일시, 장소, 내용, 참석자 등)을 사전에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, 연구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원은 지부가 요구할 경우, 지부와 관련된 상급단체 등 타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이 자유롭게 지부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제5조 (지부 임원의 인사) 연구원은 지부 임원의 노동조합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.

제6조 (지부 조합비의 일괄 공제) ① 연구원은 지부의 의뢰가 있을 때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부 조합원의 급여에서 지부의 조합비 및 기타 지부 조합원이 동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내역과 함께 급여일 익일까지, 동 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부에 인도한다.

② 지부는 지부 조합원 명단 및 공제내역의 변경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연구원은 매월 10일 이후 통보된 공제내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익월에 추가하여 처리한다.

부 칙

제1조 (유효기간) 본 보충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조합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따른다.

제2조 (갱신) 부칙 제1조(유효기간)에도 불구하고 지부가 폐쇄되거나 지부 조합원범위 변경 등 지부의 성격이 확연하게 변경될 경우 본 보충협약서를 자체없이 갱신한다.

2018. 2. 9.

한국전자통신연구원

원장 : 이 상 훈

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

위원장 : 한 주 동 (인)